

MS 사건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의 내용과 의의



박정원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지원2팀장

1. 시정조치 개요

이른바 MS 사건으로 통칭되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대표 스티브 발머) 및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유)(대표 유재성)[이하 두 회사를 MS사라고 한다]의 시장지배적地位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의결서 작성을 완료하고 MS 사에 송달됨으로써 일단락되게 되었다. 지난 해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역량을 집중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법률적, 사실적 쟁점을 분석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의결서 내용을 작성·확정하였다.

의결서에 따르면 MS측은 최종 확정된 과징금 총 324억 9천만원을 금년 4월 28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법인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272억 3천만원이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유)가 52억 6천만원이다.

그리고 과징금 납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우선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의 결합판매와 관련, MS사는 180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금년 8월 24일부터는 윈도우 서버운영체제(OS)에서 WMS를 분리해 판매·공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 및 윈도우 메신저(WM) 결합판매와 관련, 2 가지 버전의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판매·공급해야 한다. 먼저 MS사는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윈도우 PC 운영체제에서 WMP와 WM을 분리한 '분리된 버전' (Unbundled Version)을 공급해야 한다.

이로써 MS사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결합해 판매하던 WMS, WMP, WM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 경쟁제품과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등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또 이와 별도로 기존처럼 WMP와 WM을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탑재하는 경우에는 경

쟁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기회를 개선하도록 한 '탑재된 버전' (Must-Carry Version)을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리와 탑재를 병행적으로 명하는 시정조치를 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MS사의 결합판매로 인하여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와 PC 제조업체가 WMS, WMP, WM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은 PC 서버운영체제, PC 운영체제를 구입할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축출되는 등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이익이 저해되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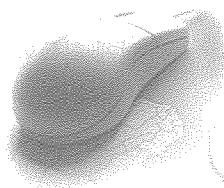
특히 EU 등 외국과 비교할 때 MS사의 시장 독점화 정도가 높고, 결합판매의 효율성증대효과 보다는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심각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MS사의 독점적 지위는 절대적이다. 국내 시장에서 MS사의 점유율(2001~2003년간)은 출하량 기준 99% 이상, 세계 시장에도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이 출하량 기준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PC 서버운영체제 국내 시장에서도 MS사는 시장점유율(2001~2003년간 평균)이 출하량 기준 77%, 매출액 기준 78%로 굳건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도 MS사는 2003년도 시장점유율이 출하량 기준 70.6%, 매출액 기준 72.1%로 시장지배력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국내 시장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등이 발달하여 미디어 플레이어 등 소프트웨어를 선택한 후 다운로드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미미하여 다른 나라보다 결합판매의 효율성증대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결합판매로 인한 효율성보다 경쟁제한효과가 훨씬 크므로 결합판매를 정당하다고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 시정조치 내용

가. 분리명령

MS사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유예기간인 180일이 지난 2006년 8월 24일부터는 윈도우 PC 서버운영체제로부터 WMS를, 윈도우 PC 운영체제로부터 WMP, WM을 분리하여 판매·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윈도우 PC 운영체제에서 WMP 및 WM을 분리하기 위하여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소스코드 및 파일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MS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지정하게 된다. 그 외에도 MS사는 분리된 버전을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팩이나 업데이트 등을 통해 사실상 분리명령의 효과를 배제시키는 탈법행위도 해서는 아니된다.



나. 탑재명령

MS사는 현행대로 WMP 및 WM을 운영체제에 결합한 제품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사의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 탑재된 버전을 공급해야 한다. 탑재된 버전은 경쟁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인터넷으로부터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 와 '메신저 센터' 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센터에 포함될 경쟁제품의 범위 등은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정하게 된다. 탑재된 버전의 경우에도 사실상 경쟁사업자가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고, 특히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된다는 점에서 시정효과가 기대된다.

다. 추가제공

MS사는 이미 판매된 윈도우 PC 운영체제 사용자에 대해 윈도우 PC 운영체제 및 WMP, WM의 인터넷 업데이트시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 와 '메신저 센터' 를 동시에 업데이트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다운로드를 선호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신청을 받아 MS사의 비용으로 경쟁제품이 수록된 CD를 무료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회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라. 정보제공

MS사는 국내 PC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텐츠 사업자 등에게 WMP와 WM이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상호연결 및 작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및 관련 문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정도는 MS사가 MSDN(Microsoft Developer Network : MS 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을 통해 통상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정보공개는 WMP 및 WM의 주요버전이 출시될 경우에는 각 버전의 최종 베타버전이 출시되는 시점까지, PC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국내외 기준 150,000개 이상의 베타 버전이 배포되는 시점까지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응용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미디어 플레이어나 메신저를 개발할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마. 호환유도

MS사는 MSN 메신저 사용자들이 다른 메신저 사용자들과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다른 메신저 사업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결합판매를 통해 형성된 WM과 MSN 메신저의 네트워크 효과를 다른 메신저 사용자들도 공유할 길이 열릴 수 있다.

바. 적용범위

이 사건 시정명령은 MS사가 한국내에 공급하는 윈도우 서버운영체제 및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대해 모두 적용되지만, 한국내에 공급되더라도 외국으로 반출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사건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을 유지하지만 5년이 지난 후부터는 MS사의 요청에 의해 시장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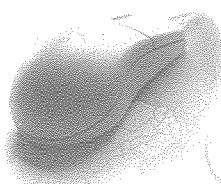
사. 이행감시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고, 이행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감시 자문기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다. 특히 분리된 버전에서 분리될 소스코드 및 파일 등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감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행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능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정조치의 의의

MS사에 대한 시정조치는 소프트웨어의 최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초(WMPd의 경우에는 EU에 의해 두 번째)의 조치이며,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초거대 독점기업에 대해 EU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된 조치를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EU의 시정조치와 같이 분리된 버전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EU의 경우와는 달리 메신저까지 분리명령을 하였고 경쟁제품을 탑재한 버전을 공급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점까지 보완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분리된 버전에 대한 수요가 미미할 가능성도 있으나,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EU의 시정조치와는 달리 메신저까지 제거도록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 즉 기



업보안이나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메신저 없는 제품을 선호하는 기업의 수요도 상당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리된 버전은 중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분리된 버전은 MS 제품과 비MS 제품의 출현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MS에 의한 시장집중을 완화가 가능할 길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단기적으로 분리된 버전에 대한 수요가 미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도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탑재된 버전도 공급하도록 한 것도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비MS 응용소프트웨어 제품이 증가할 경우 MS의 시장지배력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동등한 경쟁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기술혁신 노력을 독려하고 이러한 혜택이 독점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경쟁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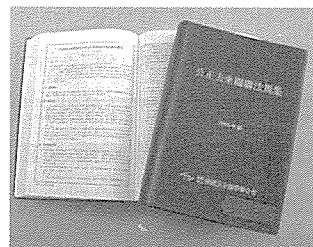
『2005년판 공정거래관련법규집』 할인판매 안내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제·개정된 공정거래관련 법령·고시·지침과 공정위 주요심결 및 법원판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2005년판 공정거래관련법규집(1,400면)』을 할인판매합니다.

문의 및 신청

-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준법지원실
TEL. 02)775-8870~2 / FAX. 02)775-8873

※ 구입신청 양식은 공정경쟁연합회 홈페이지(www.kfcl.or.kr)에서 Download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판매 가격

- 회원사 : 7만원 ⇒ 5만원
- 비회원사 : 8만원 ⇒ 6만원